

- 해당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 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KBS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제도와는 달리 방송 분량에 대한 특별한 의무규정은 없음.(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시청자 제작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분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 제9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청취자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 심의제도

1)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일반 현황

항목	방송사 자체심의	방통심의위원회 사후심의
근 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 방송법 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자체심의 운영지침 - 방송사 사규 : 방송 프로그램 심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32조(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34조(심의위원회) 제100조(제재조치등) • 심의규정 - 방송법 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의 - 방송 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정/삭제/제재조치 등 심의의견 제시 -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불이행시 → 제재조치 • 사후심의 - 방송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제규정 이행 및 저촉여부 확인 - 경미한 사항은 구두경고로 주의 환기 - 제재가 필요한 사항은 제재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심의 - 각 매체별 '심의원'에 의한 의무 모니터링 제도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심의 : 제재가 필요한 사항은 제재조치 결정 - 어린이 청소년유해성 : 연령등급분류 심의 : 등급분류 조정요구

〈표 2〉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일반 현황

○ 현행 방송법의 심의 관련 제도

- 방송은 방송전파가 갖는 공공성과 희소성,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한 내용규제를 받음.
- 사전심의 :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를 두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수행하며 반드시 등급 분류를 공지해야 함.(방송법 86조)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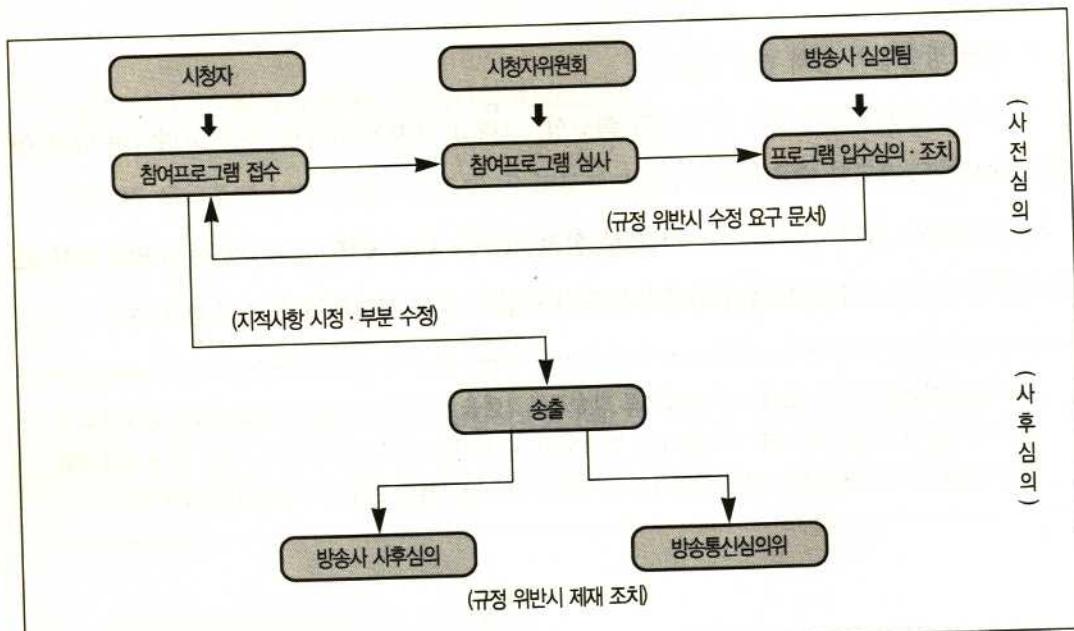
- 사후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기준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광고를 제외한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의결하며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음.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34조(심의위원회), 제100조(제재조치 등)]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제3자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각 매체별, 채널별 심의원들이 의무 모니터한 후에 심의하는 방식을 취함. 미국과 영국과 같은 방송 선진국에서도 사후 타율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수용자들로부터 불만(complaints)이 제기된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방법으로 운영됨³⁸⁾.

2)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현황

○ KBS <열린채널> 심의 현황



〈표 3〉 KBS <열린채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 과정

38) 강남준, '미국방송협회(NAB) 자율심의 제도의 변천과정 : 한국 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의', 방송연구, 2006년 겨울호, p.181

- KBS <열린채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위원회의 선정심의(운영지침 제12조, 13조)와 KBS의 자체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KBS 심의팀의 수정요구를 제작자가 수용하여 수정해야만 방송을 할 수 있음. 선정심의에서 선정되더라도 KBS 자체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방송보류 및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³⁹⁾.

- <열린채널> 관련 심의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이중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노력이 이어졌으나⁴⁰⁾ 당시 방송위원회와 KBS의 책임 회피로 인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케이블, 위성 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 현황

- 케이블방송의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방송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방송하여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수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성 불가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KBS <열린채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심의(선정심의-자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KBS의 시청자위원회가 법적 위상을 가진 기구인데 반하여 케이블의 경우 참여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방송사에게 있으므로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심의 기준 적용에 있어 법률에 기반 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⁴¹⁾.

39) 〈한충련과 국가보안법〉,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정노동자들의 해고 투쟁 기록)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교통사고로 사망한 미술가 구본주씨의 생명보험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화재가 고인의 예술인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 기록)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이거나 재벌과 같은 거대 권력의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KBS 자체 심의에 의해 방송이 보류되었음.

40) 2006년 천영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자체 심의 면제 조항을 포함한 관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방송위원회와 KBS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법안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41) 2004년 6월, 방송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빛전주방송'에 한 시민이 〈인간적인 의료문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 요청하였으나, 방송사 측은 한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유선상으로 방송불가를 통보하였으며, 그 사유로 "밝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자체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힘.

- 위성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되고 있음. RTV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전문채널로서 퍼블릭 액세스의 취지를 살려 영상물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으며, 주로 영상, 음향, 자막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함. 단, 영상물과 연관성이 없는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및 특정 기업, 종교, 정치 홍보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자에게 수정, 보완을 권고한 후 협의에 따라 편성 여부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반 인권적 내용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함. 편성국의 수정, 보완 등의 권고에 시민 제작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편성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재검토, 재심의를 하도록 함

○ 공동체라디오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심의 현황

- 일반적으로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그 특성상 생방송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완성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필요한 경우 대본이나 큐시트 심의) TV보다는 완화된 내용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지상파방송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자체 내 심의기구를 마련하여야 하고,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방송 후에도 규제기구에서 임명한 심의원의 사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는 등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취지와 맞지 않은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음.

(2) 문제점

현재의 방송심의제도는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의를 기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청자의 퍼블릭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시청(취)자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현재의 심의제도가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그동안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이중, 삼중심의 등 중복심의로 인하여 시청자와 방송사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심의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규제를 강화해 왔음.

가. 내용심의 기준의 문제

○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위헌 판단 기준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음란물 처벌 등 타 법률이나 다른 규제조항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의 보도프로그램과 같은 공정성의 잣대가 아닌, 소수의 의견의 반영이라는 다양성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⁴²⁾ 조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본질적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심의규정에 근거하면,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 혹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방송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참여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방송심의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는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심의 시에 기존방송프로그램과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매체별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차이, 다양성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음.

42) 최근에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가 모법인 방송법 제33조에 명시된 11가지 심의사항 가운데 9호의 '보도 논평의 공정성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방송 일반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며, 이는 상위법이 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사의 자체심의규정이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방송심의규정의 개선을 통해서만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의적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을 수 있음.

나. 사전심의 : 방송사 자체심의의 문제

- 역사적으로 방송심의제도가 정치적 억압, 검열 혹은 방송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자율심의제도임. 그러나 자율심의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제도는 '자율'이 아닌 방송법에 의해 강제화 되어 있으며, 방송심의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행위의 주체가 방송사일 뿐 실제로는 국가의 심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 운동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언론, 특히 방송의 독립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거대화되고 독점화된 기존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방송사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사전심의하는 것은 과거에 국가가 방송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율심의를 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검열과 함께 사업자에 의한 사적검열의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KBS 열린채널의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선정심의와 KBS 심의팀의 자체심의라는 이중심의라는 과정 규제를 받고 있음. 한정된 방송편성시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선정과정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심의팀의 재심의는 방송사의 간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함.

-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사의 시각이 포함되지 않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시청자들 또한 방송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하여도 자체심의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문제

를 해결하기 어려움.

다. 사후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 문제

- 사후심의 자체는 형식 논리상으로는 위헌소지가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준국가기구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심의 대상이 시간적 연속적 성격을 띠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음. 즉, 사후심의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방송될 내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시 자기검열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동일한 내용이 방송위원회 사후심의에서 또 걸러지는 심의의 이중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심의대상 채널의 폭증으로 인한 기계적 심의와 효율성 부족 : 현재 방송법 상 매체별, 채널별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채널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해 일괄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임. 특히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이해 없이 방송심의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사후 모니터링 제도는 모니터 요원의 구성 및 훈련 여부에 따라 심의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⁴³⁾.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특성상 소수자 프로그램, 지역 이슈 제기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심의의 대상이 되기도 함. 표적심의는 퍼블릭액세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내용 규제를 통해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43) 마포FM 'L양장점' 제재조치에 관한 건(2007.7.24) <진행자와 출연자가 1970년대 미국의 레즈비언 미술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여성의 성기를 자칭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한 내용에 대해 '주의' 조치 의결. 위반사항 : 방송심의규정 제26조(품위유지)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방송심의에서 문제가 된 '보지'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비속어가 아닌 국어사전에 정식 등록된 단어이며 레즈비언과 여성주의 진영에서 사용을 지향하는 단어이다. '보지'를 품위유지에 위반하는 표현으로 결정한 것은 방송심의위원회의 무지에서, 좀개는 그들의 공동체 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뿐 L양장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L양장점 제작자 레주파의 사점심의 거부의사 문서 중

책임이 방송사에게 주어지면서, 방송사는 사후 심의를 통해 제재를 받을 경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축소 / 폐지하거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과도한 내용 간섭을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음.

(3) 개선 방향

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 제도 개선 방향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방송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 독일 등 퍼블릭 액세스 방송을 보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규정 필요함. 방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방송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 매체, 프로그램의 성격, 방영 시간대의 특징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마련하여야 함.
- 방송법 제86조 방송사업자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조항으로 인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안 개정이 필요함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 자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자체 심의가 아니라 시청자 대표성을 갖는 별도의 협의회에서 자율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심의는 매체별로 차별화 하며,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방송참여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 제도 개선 내용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심의규정

○ 현행 방송법을 개정⁴⁴⁾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자체심의 면제와 별도의 심의규정 마련하여야 함. 방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방송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 매체, 프로그램의 성격, 방영 시간대의 특징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마련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심의규정)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33조(심의규정)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한다.

〈표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법 일부 개정안

○ 제한적 내용심의제 마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내용이나 형식에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 일반 시청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달리 제한적 내용심의를 실시하여야

44) 2006년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TF구성(민변, 천영세의원실,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법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국회정책토론회,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한 후 2006년 말 정기국회 때 법개정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방송위원회와 방송사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음. 여기 실린 내용은 TF에서 논의된 기본안 중 일부이며, 2006년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KBS 열린채널은 열려있는가-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 발제문 내용에 일부 수정을 했음을 밝힘.

함. 제한적 내용심의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표현의 자유는 불법적, 상업적, 차별조장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통과 방송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자의적 내용심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한적 내용심의 사안

- 법률에서 제작, 유통금지하고 있는 내용(음란, 명예훼손, 선거기간 정치광고 등)
- 상업적 목적의 상품, 서비스 내용의 프로그램 및 광고
-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hate-speech)

- 반론권 보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경우, 소수의견의 반영이라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단, 방송이 된 이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혹은 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형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에 입각한 반론권을 상반되는 견해를 지닌 사람 혹은 단체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공정성은 한 프로그램 내에서 산술적 균형, 객관성에 있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2) 매체별 심의 기준 차별화

-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위성방송의 접근비용과 사회적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기준도 차별화 함. 일반적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 비하여 더 많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큼. 이에 비해 케이블 TV의 경우는 지역채널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위성방송의 경우는 전국에서 시청 가능하지만, 그 영향력은 시청자층에 못 미침. 이러한 각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규정을 차별화하여 적용해야 함. 앞으로 다채널 디지털 시대에 보다 확장될 시청자/이용자의 참여에 기반한 쌍방향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심의 기준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지상파TV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는 내용심의와 등급심의를 기본으로 함. 단, 지상파TV의 경우 한정된 편성시간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내용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들을 표현하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사전 내용심의는 불허하며, 유해 표현물 관리를 위한 등급심의만을 시행.

-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의 경우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내용심의와 등급심의를 모두 면제하고,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후 자율심의의 경우, 방송사의 사후심의는 불허하며, 시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 등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평가의 결과가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어, 시청자들의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의 경우, 현행과 같은 모든 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가 아닌, 수용자들로부터 불만(complaints)이 제기된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사후심의의 경우에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별도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법해석이나 그 결과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주체

: 방송사 심의 아닌 시청자 대표성 갖는 별도 협의체에서 자율 심의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내용심의 혹은 등급심의를 담당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규정이나 현행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방송을 거부할 경우 제작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으로 유발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시청자제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구제절차/변호사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제작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방송 전 서약서 제출), 제작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제작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방송 이전에 시청자제작자가 기획과 제작단계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 또한 방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고소)에 대해서 제작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변호사 등).

구분	사전 심의			사후 심의				
	자율심의		행정기관 심의	법원심의	자율심의		행정기관 심의	법원심의
	독립자율심의	방송사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자율심의	방송사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상파 TV 참여 프로그램	내용심의 ○ (별도 심의 기이드라인 마련) 등급심의 ○ (시청자위원회로 심의일원화)	×	×	(검열)	가처분	시청자 방송평가회	×	등급분류심의 ○ 모니터링 내용심의 ✕ (불만요청 제기에 따른 일부 내용심의)
케이블·위성 참여프로그램	내용심의 ✕ 등급심의 ○ (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	(검열)	가처분	시청자 방송평가회	×	등급분류심의 ○ 모니터링 내용심의 ✕ (불만요청 제기에 따른 일부 내용심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내용심의 ✕ 등급심의 ✕	×	×	(검열)	가처분	청취자 방송평가회	×	등급분류심의 ✕ 모니터링 내용심의 ✕ (불만요청 제기에 따른 일부 내용심의)

〈표 5〉 시청(취)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 개선안

3. 영화

-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의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1) 현황

가.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의 증가

○ 오늘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 제작 및 상영은 매우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표현 양식이 되어가고 있음. 개인 캠코더의 보급률이 10%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결합된 디지털 카메라, 웹캠, 폰캠 등 간단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일상화되고 있음. 또한 사회 각 주체들이 주최하는 영화제가 셀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를 올리는 등 상영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은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실상 영화로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임.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로서 제작되는 영화는 영상산업의 규제 방식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고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함.

나. 현행 영화 규제 법률

1) 의무등급제도

■ 영화

〈관련조항〉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⁴⁵⁾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 영화 ·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 ② (생략)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9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 영비법 29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함.

45) 영비법 제2조(정의)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29조 1항 1, 2, 3호)

○ 영화제작 · 수입 · 배급 · 상영을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영화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화 상영등급분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29조 3항에서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45조), 영화를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94조)이라는 처벌 조항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도록 하고 있음.

■ 비디오

〈관련조항〉

제50조 (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3.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10.26 대통령 제19714호]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1. (생략)

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 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 비디오는 영화와 달리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예외조항의 단서로 '영리'가 아닌 '대가'를 근거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중에 시청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없이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음.
- 비디오 등급분류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등 행정 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 등급분류의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유통매체가 비디오물이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에서 제외되어 또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상영등급분류의 기준과 내용

〈관련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기준 제4조(등급분류기준)

- ①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기준 생략)
- ②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기준 생략)

- ④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이하 기준 생략)
- ⑤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반국가적·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1.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2. 인간 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 충동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3. 수간·근친상간·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학한 내용, 성욕 자극만을 추구하여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 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기타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을 심히 훼손하는 것 등 반국가적·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것

〈표 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현황

(2007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연감)

제작	제작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총
한국 영화	2007	20편	28편	53편	32편	.	133편
외국 영화	2007	49편	80편	125편	155편	2편	411편
	2006	53편	74편	101편	64편	2편	294편

- 영화 등급 분류 항목은 전체상영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연령등급만을 알리고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06년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편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이는 "한국영화가 폭력성, 외설·선정성 등 자극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며 "폭력성, 필요 이상의 욕설과 폭력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

○ 영등위는 외국영화에서도 2006년과 비교해서 15세 이상 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제한상영가로 판정된 두 편의 영화 <천국의 전쟁>과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판정 근거로 두 편 다 직접적이고 과다한 성애묘사 및 동성애, 항문성교 등 과도한 외설·선전성을 제시함.

<사례>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5.11.18. 영등위에 카르로스 레이가다스(Carlos Reygadas) 감독의 <천국의 전쟁(Battle in Heaven)>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영등위는 영화의 내용 중 '발기된 남성 성기의 구강섹스, 속까지 보여주는 여성 성기 및 발기된 남성 성기의 노골적 노출, 발기된 남성 성기 확대장면, 예수 그림 속의 음모노출, 남녀가 나체로 누워 있는 장면 등 섹스장면의 리얼함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고, 전례 없이 노골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과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2008.07.31. 2007헌가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 제한 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이 규정 이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이 규정은 제한 상영가 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영등위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바, 위 규정과 관련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함.

○ 영등위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08.10.30 2004헌가18). 결정요지에서 등급분류 보류는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며, 영등위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음으로 영등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함.

○ 영등위는 헌법재판소의 영화 제한상영가 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한상영가'에 대한 개선안⁴⁶⁾에서 "현재의 제한 상영가 등급은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등급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등급의 명칭에 대하여 "기존의 4등급의 연령등급 이외에 등급이라는 의미에서 '등급외 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그 '등급외 영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성과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가 있는 영화"로서, 내용 수준은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도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에서 인정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영등위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폐지하고 '등급외 비디오물'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이 등급의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은 영화의 '등급외 영화'와 동일하다고 함.

(2) 문제점

46) 영화 제한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분류보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중 '영화 및 비디오 등급분류 개선(안)' 황창근(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가. 의무등급제도의 문제

<사례>

2008년 12회 인권영화제(2008년 5월 30일~6월 5일)는 집회 신고를 내고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야외 상영을 하였다. 지난 12년간 영화의 사전검열을 없애기 위해 싸워온 인권영화제는 현행 영비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상영등급분류' 제도에는 여전히 사전 검열의 잔재가 있다고 보고 거부하여 왔다. 상영 등급분류제도의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상영등급분류제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필증을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진위의 등급분류면제추천이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말하지만, 지난 2001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상영작으로 예정되어 있던 작품 중 <메조포르테>와 <카이트>가 "성적인 노출과 폭력의 강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을 받지 못하기도 했으니 "형식적인 절차"만은 아니다.)

지난 7년 동안 극장들은 인권영화제에 대한 영진위의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이 없어도 대관을 허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등급분류면제추천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영비법에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경우, "누구든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상영관의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학상영관이나 예술영화전용관이라 하더라도 영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1)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도 상영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동법 29조에 따라 상영등급을 받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4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94조) 등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의무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영화를 제작, 상영, 배급하는 데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독립영화에 대한 규정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업자와 동일하게 등급분류를 강제하

고 있음.

○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화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비디오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비디오 제작판매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2) 영상산업과 관계없는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에 대해서까지 상영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의 의무적인 상영등급분류⁴⁷⁾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사전 검열⁴⁸⁾로 볼 수 있음.

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업자는 누구든지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29조) 이를 위해서는 표현물의 제출을 의무로 두고 있고,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 영등위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 받고 있으며, 기관 구성 방법이나 그 필요경비의 조달에 비추어 영상을 등급위원회 실질적으로 행정권 주최라 할 수 있으며,

47) 헌법재판소는 구 영화진흥법 제21조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위헌선고(2001.8.30.2000헌가9)를 한 바 있는 있으며, 이와는 달리 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7.10.04.2004헌바36)

48) 사전 검열이라 함은 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나)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다)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 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
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비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한다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경우, '누구든지' 영화 상영을 취소·금지 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배
한 경우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영비법은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까지도 등급분류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
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한조치(상영등급분류) 과정에 영상산업과 관계없는 비영리 독립제
작 영화 또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실험적으로 제작되는 창작 영상물, 특정 공간에서 상
영되는 영상물 등도 동일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
단과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제한은 본래의 기본권 향유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함.

○ 상영등급분류의 예외규정인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29조 1항 2호)을 들어 그 피해의 최
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나, 영진위 역시 그 위원을 문화부장관이 위촉하고 그 위원
선임 기준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
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위와 다를 바 없이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며, 영진위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추천 없이 상영할 경
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예외조치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영진위의 추천 기준⁴⁹⁾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천권 행사 여부에
대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음.

3) 제도적 허점과 행정기관의 과도한 사전 통제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
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으나, 이 비디오물을 정보통신망 밖에서 상영될 경
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비디오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가'라는 것이 실제 비디오물의 제작비에 대한 실비에 대한
지불일 수도 있으므로, 비디오도 동일하게 영화의 '영리'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비디오의
배급이나 공급을 허용해야 함.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조항에는 행정기관이 허용하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음. 문화관광
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 권리가 과도하게 사전에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지금과 같이 영등위가 행정적 권한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영등위가
검열기구라는 규정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영등위의 존립은 논란의 여지가 이어질 것임.

나. 상영등급분류의 기준과 내용의 문제점

1) 등급분류의 자의적 해석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등급분류기준의 '주제 및 내용의 이해',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 '반국가
적·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을 운운하는 기준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모호한 기준은 콘텐츠 참여자들이 창작물을 제작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앞

49)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관한규정] 제4조(기준) ①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2.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3.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으로 만들어낼 창작물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어 창작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화 창작의 다양성과 발전을 막음.

2) 제한적이며 권위적인 등급분류 기준

○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 ‘미풍양속’,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 분류기준의 표현들은 몇몇 심의위원들의 권위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의존, 마치 사회적 합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으면서 그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음.

○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 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로 국내 작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입 비디오물을 수단으로 한 교육용 비디오물을 제한하며,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을 수 있음.

3) 교묘한 검열과 문화적 권리 침해

○ 심의 기본 정책을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충돌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처벌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치중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제한 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명백한 검열이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작품은 비디오나 DVD를 출시할 수도 없으므로 창작자와 향유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문화 향유권을 침해 함.

4) 현실 불가능한 등급분류의 규제

○ 영화관 혹은 비디오 등의 오프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등 영상물의 양적 증가가 폭발적이므로, 모든 영상물을 규제 위주의 심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제한상영가’ 영화는 비디오나 DVD 출시가 금지되고 있어, 제한상영가 영화나 비디오 등급분류 보류인 작품들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다운로드로 확산됨. 결국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가지고 있음.

5) 영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내용정보⁵⁰⁾가 부족

○ 연령등급은 결과적으로 관람 가능한 연령만을 알릴 뿐, 향유자들이 스스로 보거나 보지 않을 권리를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 영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표현수위를 알 수 있는 내용정보의 제공이 절실함.

(3) 개선방향

가.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에 대한 별도의 심의 체계 마련할 필요

(등급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사전적 완전등급제의 도입)

○ 영화 제작 및 상영, 배급을 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나 상영회, 영화제 등

50) 영등위는 2008. 12. 31일부터 등급분류 역할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정보제공 성격을 강화하여 영상물의 내용기술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지를 한 바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8 - 14호)

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사전적 '완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함. 이 영화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책임을 묻도록 함.

○ 영비법 29조에 상영등급분류의 예외규정인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29조 1항 2호)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행정기관에 위한 사전검열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동조 3항 및 42조, 94조 등의 처벌 규정에 의해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해 등급면제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법조항 신설이 절실힘.

○ 이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 상영, 배급,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행 영비법을 개정해야 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 및 비디오는 자유롭게 제작, 상영, 배급하도록 허용해야 함. 영상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책임을 묻도록 함.

나. 자율적인 민간 협의체의 심의제도

○ 영화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영상 표현물에 대하여 일일이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영등위가 가지고 있는 심의 기능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민간 협의체의 사전적 심의제도를 구성해야 함.

○ 심의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문화다양성과 사회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를 함께 구현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민간 협의체의 심의 기구로 만들어야 함.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기관의 독점적인 추천방식을 삭제하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 사회적 소수자들도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시민이 문화생활에 참여·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심의 기준과 내용

○ 하나의 창작물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급분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허용하는 범위로 적용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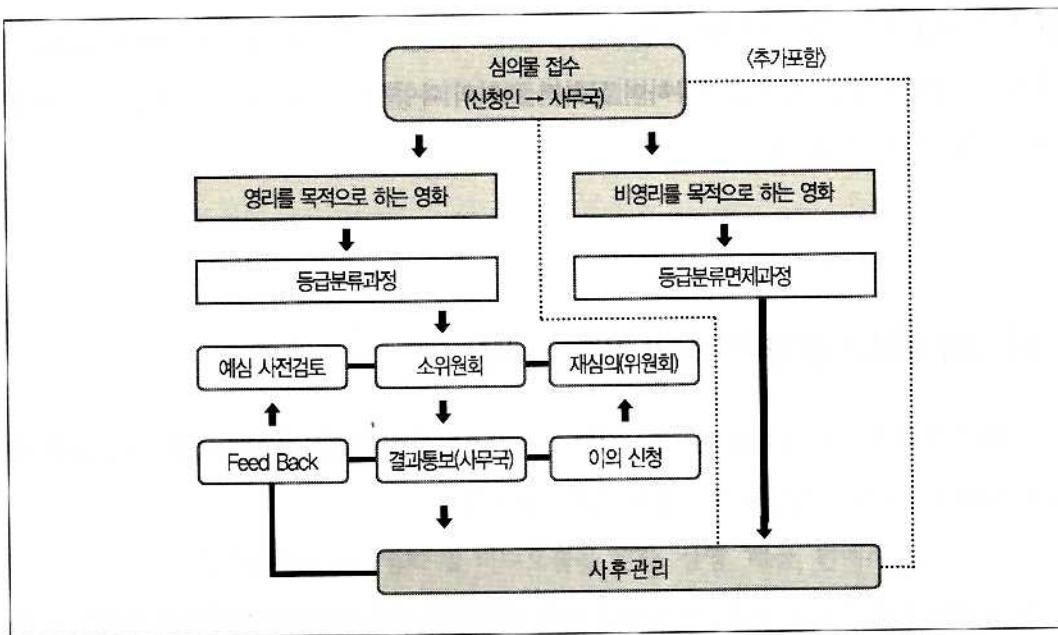
○ 창작물의 제작자가 자신이 창작품에 대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분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며, 재심의 과정에서도 소수의 의견과 반론을 보장하도록 하는 구조적 절차가 필요함.

○ 심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는 심의기준 연구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의견 수렴과정은 공론화를 통해 대화하고 합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공개적이어야 함.

라. 내용기술제 도입

○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기술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신이 원하거나 피하고 싶은 영상물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서비스로 거듭나야 함.

○ 내용기술제는 정보 서비스와 문화적 권리의 지원, 문화향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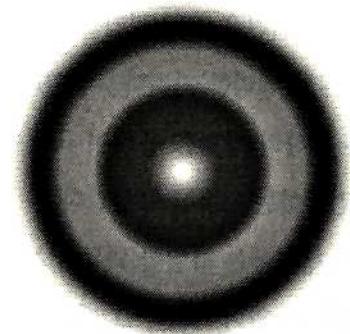


〈표 7 상영등급분류 추진체계 개선〉

〈참고문헌〉

- 이원재, '표현의 자유 확대와 심의정책의 재구성',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개정 공동행동 워크샵자료집〉 2008. 04. 07
- 이재정,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제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개정 공동행동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8. 05. 21
-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영상물등급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특집 기사 '영화등급분류제도의 현안과 쟁점', 영화진흥위원회격월간 2008. 04. Vol. 76
- 영화 전문 주간지 기사, '표현의 자유논쟁 다시 불붙나?' 씨네21, no.655
- 황창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개선(안)' 〈영화 제한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분류보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영상물등급위원회 2008. 11. 12.
- 2007 등급분류연감, 영상물등급위원회

IV ハル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채택)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2. 16 채택, 1976. 1. 3 발효)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2. 16 채택, 1976. 1. 3 발효)

제15조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⁵¹⁾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1976년 11월 26일

제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6년 11월 30일 나이로비에서 제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권리를 가진다)’를 상기하고,
유네스코 현장 전문에 문화의 폭넓은 보급 다양성,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간성 교육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 필수적임을 상기하고,

1966년 11월 4일 제14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규정과 특히,
제1조에서 “각 문화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및 제4조 “누구든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예술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학을 즐길 수 있으며, 세계 모든 학문분야에
서 이루어낸 성과나 그 결과 얻어진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살찌우기 위해 기여해
야 된다”와 또한,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 법률 준비의 취지에서 참가국이 “평화 및 민족간 이
해를 강화시키거나,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성을 정신적으로 풍부하
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참가국 스스로가 다른 국가들 중에서 그들이 존중하는 문화적
성취에 대한 모든 것에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상기하고,

문화발전은 일반적인 발전을 보완 및 조절할 뿐만 아니라 진보를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다음을 고려하여 :

(가) 문화는 사회생활의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일반적인 국가정책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고, 문화는 그 진수로서 개인이 창조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나) 문화는 오늘날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류발전에 있어서 필수
요소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써 사회의 정신적이고 잠재적
인 성장을 끊임없이 보장해야하며, 이 성장은 모든 회원국들의 완전한 조화 발전과 그들의 창
조능력의 자유로운 구사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다) 문화는 단순히 엘리트가 그것을 모든 도달 가능한 곳에 두기 위한 생산, 수집, 보존하는
작업이나 지식의 축적물이 아니라, 한 민족이 과거의 문화나 문화유산 속에서 풍요롭게 생활했
던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모델로, 이 모델은 그들 자신의 역사가 그들에게 제
공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문화는 예술이나 인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한
번 또는 동일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생활방식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의사소통의 욕구에 대하여
는 제한이 있다는 것;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다양한 문화 활동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격도야 및 개인의 존엄성에 필수조건이며,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접근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창조된 경우에만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들로 하
여금 문화적 이익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생활 및 문화발전과정에 적극 참
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는 동일한 두 가지 보완적인 양상을 지니는데 이
것은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보면 명백해진다. 즉, 접근은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참여는 문화의 참된 의미로서 그것에 부여된 문화에의 접근을 넓혀 준
다. 참여가 없는 문화에의 단순한 접근은 문화발전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
려하고,

문화행위는 종종 전체 인구의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혼존 조직이나 단체,
방법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교육, 낮은 생활수준, 열악한 주거 조건, 경제 사회적 의존도 때문에
특히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실과 지향해야 할 이상, 선언된 의도와 사업 또는 예상된 결과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

51) 번역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front/unesco_global/global_04_view.asp?articleid=60

다는 것을 명심하고,

목표, 내용,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문화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대중들의 참여정책에 있어 필수적이고 시급한 반면, 주어진 해결책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사이에 혼존하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볼 때 모든 나라들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 나라의 통치권, 다른 나라의 내정불간섭과 평등권, 민족자결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굳게 믿고,

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권한이 회원국들에게 양도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깨닫고, 이러한 책임감은 유엔현장과 유네스코 현장,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위한 국제규약과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선언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에 접근하는 것과 그들 스스로의 문화욕구를 알고, 광범위한 참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 이러한 장애요인들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 정치, 상업적인 폐쇄 사회의 영향으로 야기된 온갖 종류의 장벽들도 추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접근과 참여의 문제는 생활의 다양한 분야와 생활양식과 연결되는 총체적인 접근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접근은 각 사회 특성에 따라서 다양화되어야 하며, 생활을 위한 진정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근본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는 대중노동자, 노동단체, 여가시간, 가족생활, 교육훈련, 도시계획 환경 등의 조건을 다루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에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 다음의 중요한 역할들: 사회진화 및 진보에 기여하는 청소년들; 자녀들의 문화교육과 그들의 창의성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들; 새로운 사회,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들; 사회변화에 활동적인 기여로 인한 노동자들;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 내지는 보유자로서의 예술가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 지역사회와의 자발적인 지도자로서 협력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문화발전 종사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과 참여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즉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문화훈련의 각 분야에서 최대의 자유와 관용, 문화

의 창조와 보급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성의 확인과 개성의 존엄성 및 가치, 또한 유엔 현장이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에 의해 보증되는 인권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권 등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문화적 발전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은 물론 침략정책이나 식민지주의, 신식민주의, 파시즘, 인종차별주의 등과 같은 모든 형태나 실행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동질성의 주장이나, 진위성, 존엄성 등의 형태를 취하며; 동질성의 보전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는데, 특히 부적절한 모델의 만연이나 완전히 숙련되지 않은 기술들에 의해서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적 동질성의 주장은 고립된 단체들의 구성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폭넓고 빈번한 접촉을 위한 상호욕구에 의해 보조를 맞춘 결과이고, 그런 접촉들은 본 권고의 목표가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근본적인 요구들임을 고려하고,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완전한 문화발전에 이르기 위해, 일반교육, 문화교육, 예술적 훈련들에 의해 행해지는 근본적인 부분과 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의 사용을 명심하고,

대중전달 매체는 문화 확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즉 문화발전의 전례 없는 가능성 을 공개하거나, 개인의 숨어있는 문화잠재력을 해방시켜줌으로써, 문화의 전통적인 형태를 보존하거나 대중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서 보급하거나 또는 이들 새로운 형태들을 대중전달을 위해 매개체를 바꾸거나, 사람들에 의한 직접 참여를 신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접근과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로 인간적인 가치에 근거한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서, 인문학적이거나 민주주의적인 내용으로 문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것이 교대로 '상업적인 대중문화'로 인한 악효과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상업적인 대중문화는 국가문화나 인류문화 발전을 위협하며, 인간성을 봉괴시키거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 회기의 의제 28로서 주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있거나 문화생활에 기여하는 대중들의 참여에 관한 제안들을 상정하고,

제18차 총회에 이 현안은 국제규약상의 당면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결정한 바,

1976년 11월 26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I. 본 권고의 정의와 범위

1. 본 권고는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문화 창조나 이익들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 활동의 수단과 기구들을 대중화하기 위해 회원국이나 당국자들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2. 본 권고의 목적상 :

- (가) 문화에의 접근 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적절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창출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연습할 수 있고, 지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가치와 문화 자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 창출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문화생활에의 참여 라 함은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화로운 삶, 사회의 문화진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전달 또는 활동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그룹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 지식 (대화나 일치된 행동, 이해, 각각의 독창성이나 차이점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상호이해와 평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촉진하는 관점에서의)들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3. 본 권고의 목적상:

- (가) 문화 라는 개념은 단체나 개인들의 생활방식이나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형태의 창조성이나 표현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 (나) 일반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자유민주적인 접근 은 적절한 경제, 사회정책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 문화생활에의 참여 는 행동이나 활동평가는 물론 문화정책에 관계된 결정을 힘에 있어 다른 사회동반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 문화생활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라 함은 다음 사항들과 관련되어 있다:

- (1) 경제발전 및 사회 정의를 위한 개발정책;
- (2)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야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또한 그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며, 그들에게 문화교육과 예술적인 훈련을 제공해 주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그들의 창의력을 자극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공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공동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생교육정책;
- (3) 사람들의 문화적 동질성 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 (4) 직접적으로는 진보를 향한, 더 분명하게는 핸디캡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들의 불평등 – 그들을 배제시킨다는 관점에서 – 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히 그들의 생활조건, 기회와 그들의 야망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특권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
- (5) 개인 및 사회의 완전한 발전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의 사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설계된 환경정책;
- (6)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권장하고, 문화목적의 현대적, 전통적 매개체의 강화와 이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케이션정책;
- (7) 문화의 평등, 상호존중, 이해와 신뢰, 평화를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협력정책.

II. 입법과 규칙제정

- 4.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만약 회원국들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 국가의 헌법절차에 맞게 법령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법조문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가)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인권을 보장할 것, 이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정신에 맞게, 유엔 헌장이나 유네스코 헌장에 선언된 이상과 목표에 일치되어야 한다.
- (나) 인종, 유색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이나 사회, 재정상황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차별이나 차별대우 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국내외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가치 창출과정에 있어 모든 분야의 인간들에 의해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
- (다) 문화접근 및 효과적인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라) 잘 알려진 다른 사람들의 문화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애와 상호이해를 강화시킬 목적의 국내문화 발전과 보급 및 국제협력발전을 신장시켜야 한다.
- (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사회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점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권리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 (바) 문화평등에 대한 인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의 공통유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나 외국소수민족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포함해서 보장해야 한다.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한다. 소수민족이나 소수외국인들도 그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여 살찌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발견한 나라의 문화생활에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편 그들 문화의 동질성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사) 민족적, 지역적 언어나 방언, 민속예술, 과거와 현재의 전통, 다른 사회단체들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지방문화 등 모든 형태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 강화되어야 한다.
- (아) 핸디캡으로 인하여 문화생활에 있어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자) 교육 접근에 있어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차) 인간 이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카) 창조적인 일에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해서 창조적인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일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타) 문화정책 실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범주의 개성을 가진 전문가 계층을 양성해야 한다.
- (파) 문화교육과 예술연습은 교육과정과 연습실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제공될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외에 인간에게 예술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하) 지적이거나 수공의 또는 몸짓 등으로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 예술과 생활을 통합한다는 관점에서의 예술연습과 경험과 표현 등을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가) 대중매체는 독립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창조적인 예술가 및 대중의 효과적인 참여가 있도록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매체는 문화의 독창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의 질을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이 매체는 문화적인 지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 이해와 평화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 (나) 문화유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호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와 현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망하는데 필요한 관습과 과거를 보호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
- (다) (1) 과거의 유산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하는데 특히 고대의 기념물이나 관습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2)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중요성을 대중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문화와 사회 생활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삶의 배경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며;
(3) 자연환경의 질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 (라) 각자 개인에게나 모두에게나 문화 창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당한 단체를 통해 일과 여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기관들의 운영조직과 노동 시간과 여가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품위를 떨어뜨리는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은 물론 혼란과 침략, 지배, 멸시, 인종편견 등에 바탕을 두면서 개최되는 가칭 문화행사를 반대한다;
- (바)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에 맞게 평화와 국가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전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문화상품 보급을 촉진한다.

III. 기술, 행정, 경제, 재정 조치

5. 만약 회원국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다면,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문화 활동을 향상시킬 수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인 수단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그들이 평생교육이나 문화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문화에 접근하거나 자유로이 문화생활에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격하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문화행위를 위한 방법과 수단

시설과 활동, 결정들의 탈중심화

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가) 문화 활동을 분산시켜서 지방 센터를 발전시키거나, 인구가 적은 변두리나 혜택을 덜 받은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나) 큰 도시에 있건 작은 도시나 마을, 심지어는 도시 이웃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기구의 조직을 장려하고 확장하거나 강화시켜야 한다;
- (다) 사용자들의 요구에 가장 잘 맞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장려하고 문화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완성을 촉진하여 사회 교육적 작업을 위해 설계된 어느 정도는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물 통합은 광범위한 대중들로 하여금 인식을 증가시키고, 문화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수단들을 가능하게 한다;
- (라) 단체나 개인들 간의 전달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시설물을 문화목적에 사용될 수 있

- 도록 추진해야 한다;
- (마) 지역사회 및 지방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 (바) 지역이나 지방의 독창력을 격려하여, 결정권자들에게 적정수준에 맞는 필요한 대책을 제공하거나 문화적 문제에 관심 있는 다른 팀들의 대표자들에게 결정 기능을 공유하게 해주고, 이러한 결과로 행정결정에 있어 이차적인 중심을 개발시킨다;
- (사) 주거지역이나 일터에서의 사람들 자신의 조직에 기초한 일반대중에 의한 증진책이나 예술적 창작 그리고 문화 활동을 발전시킨다;
- (아) 도시빈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 장애자, 병원이나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하며, 결정과 책임은 가능한 한 활동에 참여하는 그룹들에게 맡겨두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나 발전이 미진한 문화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적용한다.

일치된 행동

7. 회원국 및 당국들은 활동자체나 결정을 함에 있어 일치된 행동이나 협동을 촉구해야 한다:
- (가)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나 예술적인 비 기관이나 비 전문가적인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아마추어 활동들에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 (나) 시골이나 지방에 국가수준의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문화 활동의 목표나 방법, 조치, 결정을 함에 있어 참여하기를 원하는 전문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자 단체들

8. 회원국이나 당국자들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자 단체들에 소속된 사람들, 봉급생활자들, 자영업자들(농부, 장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문화정책 및 계획을 자유롭게 수행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9. 회원국이나 당국은:

- (가) 문화발전 종사자들의 훈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정보, 통신, 표현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여, 사람들을 서로 접촉하게 하거나 대중으로 하여금 예술작품과 예술가들 또는 대중과 문화단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그러한 요원들에게 활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역단체들의 자발적인 애니메이션 작가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훈련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자극한다.
- (다)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며 또한 창작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을 위한 도구나 기구를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센터나 기관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예술적 창작

10. 회원국이나 다른 특정당국은:

- (가) 예술가, 작가, 작곡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조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 경제, 재정적 여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 (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법적 조치에 추가하여 예술작품의 복제권이나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인 조치 및 예술창작활동의 집단적인 형태(연극, 영화 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술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획된 재정적인 조치들;
 - (2) 친목, 포상, 국가위원회, 예술가들의 고용정책, 특히 공공건물의 건설이나 장식을 위한 고용정책;
 - (3) 문화보급정책 (전시, 음악, 연극작품의 공연 등);
 - (4) 개인 예술가나 그룹, 단체들에게 성공적인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강요 없이

예술가와 문화부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목적 작업장에서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정책;

- (다) 예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 (라)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차별 없이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 (마) 고품질의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의 출판이나 번역, 음악작품(악곡)을 재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 (바)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 (사) 재정원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작품 평가 및 회원권의 규칙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인체를 보장해야 한다;
- (아) 아마추어 예술가 그룹들에게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서 비전문가와 전문예술인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화산업

11. 회원국들과 당국은 이익을 만드는 기준이 문화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개인 문화산업가들과 협의한 후 최초의 장비들을 보완해 주거나 교체해주는 것은 물론 기계장치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급

12. 회원국들과 당국자들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거나 포상해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여건을 조성하여 가장 넓은 가능한 사회범주에 특히 상업적인 기획으로 인해 무시되는 문화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 있는 문화협력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장려금과 계약

정책있는 조치를 취한다;

- (다) 문화상품의 소극적인 소비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에 적극성을 심어줄 수 있는 보급 형태에 관심을 집중한다.

연구

13. 회원국과 당국은 문화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새로운 실험을 자극하거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청중들에게 주는 충격을 연구 함은 물론 현재의 활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외 목표의 문화발전 연구프로젝트를 육 성해야 된다.

나. 문화행위에 관련된 정책들

커뮤니케이션

14. 회원국과 당국자들은:

- (가) 개인, 대중, 창조적인 예술가들, 아마추어와 제작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디어의 계속적인 교환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통신수단, 즉 회 합, 토론, 대중공연, 단체 활동, 축제 등을 증진시켜야 한다;
- (나) 스포츠 행사나 자연탐구, 예술과 미학교육, 주요행사, 관광 등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 적 접촉 및 교류를 위한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
- (다) 광범위한 그들의 회원들에게 정보와 자유로운 문화적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문화 활동을 통하여 그들 간에 서로 잘 알 수 있게 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일상적인 사회매개체(지역사회, 기관, 대리점, 노동조합, 기타 단체 등)를 장려 해야 한다;
- (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쉽게 야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마) 이동적이고 평이한 보급 형태를 준비함으로 문서작품들에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하 며,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곳에서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사람들 대부분이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개체가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구술전통 을 수집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가장 최고의 문화 를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시청각 매개체의 광범위한 사용을 확장시켜야 한다;

(사) 대중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수집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 예술가와 제작자들 사이에 아이디어의 항구적인 교류를 촉진시켜야 하며, 지역 및 공동체에서 대중들이 사 용할 수 있게 제작소 건립을 촉진하는 등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신장시켜야 한다;

(아) 청중들의 폭넓은 다양성을 염두에 두면서, 청중들에게 광범위한 선택범위를 제공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 및 다양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 청중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 램의 문화적인 질을 강화시키고, 모든 관중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회화체와 시각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선전이나 광고보다는 정보나 교육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해 주거나, 대량생산 형태로 인한 잠재적인 악영향으로부터 국가문화를 보호하 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통신매체를 장려해야 한다;

(자) 예술가, 대중매체와 사회와의 사이에서와 같은 상호영향이나 제작과 문화프로그램의 효과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학습과 연구를 증진시켜야 한다;

(차)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차별화하여, 전달매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함 을 물론 시청각 언어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

(카) 관중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대량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적인 방법으로 관중의 특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

15. 회원국과 당국은:

(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직업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육문화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범위 내에서 문화계획과 교육계획을 제도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나) 지역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제도와 내용, 방법 등에서 요구할 지 도 모르는 어떤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창출해낼 필요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대중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다) 예술가나 예술 활동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문화교육과 예술프로그램을 조직적인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

청년

16. 회원국과 당국은 젊은이들의 요구와 야망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문화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사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들 조국의 문화유산 및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정과 국가 간 이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문화협력의 관점에서 휴머니즘의 이상을 향상시키거나 널리 인정되는 교육, 도덕적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환경

17. 회원국과 당국은:

- (가) 도시건설계획이나 거주하고 있는 건물배치에 대한 준비와 실행, 그리고 또한 현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적인 지역과 도시, 유적 등의 보호에 있어 거주자들이나 그들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치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줘야 한다;
- (나) 정부간 조직과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적 기구를 고려해야 한다.

IV. 국제협력

18. 회원국과 당국은:

- (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과 유엔의 이상과 목표인 각국의 통치권이나 독립, 상호 이익, 문화의 동등성 등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간 혹은 다국가간 지역적 국제적인 문화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나)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국민들을 존중하게 함으로써, 무력이나 지배, 침략에 의한 국제 혼란이나 정책에 찬동하는 행동을 거절도록 해야 한다;
- (다) 국민들 간에 더 나은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문화적 가치나 이념의 유통을 격려

해야 한다;

(라) 문화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화시켜야 한다. 특히 그들 문화의 동질성을 존중하는 표시로 개발도상국들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 문화프로젝트의 실행 및 공동노력에 의해 창조된 작품들의 제작, 보급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발전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단체나 문화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바) 대중들을 위한 비 정부조직, 사회문화단체, 무역협회, 사회직업단체, 여성단체, 청년회, 협의회 기타 조직(예술협회 등)들을 장려해서 국제문화교류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사람들의 교류나 서로 다른 나라와의 전문가들 사이의 협의의 결과인 상호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아) 문화의 복합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서로 다른 나라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 문화도입과정이나 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한다;

(자)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가 전 국제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인 방식에 삽입되거나 재 삽입될 수 있도록 선택된 메시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차) 언론, 도서, 시청각 매체 특히 텔레비전 등이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돋거나 다른 나라의 문화 성취 정도를 아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원거리 통신 위성을 포함한 평화이념, 인권, 기본적인 자유, 사람들 사이의 우정, 국가간 이해와 협동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통신매체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 국가의 문화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주는 반대적인 결과와 타락시키는 효과를 준다는 관점에서의 민족간, 전쟁, 포격, 인종차별주의 등과 반목적인 이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준다;

(카) 승인받은 재정적 시설을 국제교류와 문화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의 활동에 제공해야 한다.

V. 연방국가

19. 본 권고의 시행에 있어 연방헌법을 가진 회원국은 연방헌법의 권한으로 헌법제정권이 있는 국가와 지방 혹은 주에서 각각에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을 때는 본 권고의 여러 규정들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1976년 11월 3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19차 회기
에 있어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민중 커뮤니케이션 협장》⁵²⁾

The People's Communication Charter

2006년 1월 버전

우리, 이 협장의 조인자들은 다음을 공인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개인 및 그들 공동체의 삶에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생존 및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전화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미디어의 상업화와 소유 집중이 공공영역을 훼손시키고 있고 민주주의에 필요한 의견의 다원성 및 문화적 표현과 언어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문화적, 정보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미디어 폭력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고 있다. 상투적인 묘사는 우리 모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며 가장 취약한 자들을 낙인찍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협장의 비준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및 국제법에서 준수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1장 상호 존중

사적 그리고 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와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리
는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온전성, 정체성 및 비차별의 기준에 따른다.

52) 민중커뮤니케이션 협장은 1990년대 초, Third World Network(TWN, 말레이시아) 및 TWN의 제휴단체인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CAP)과 연계한 학자 및 활동가들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 차원의 민중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서 출발하여, 1996년 Cultural Environment Movement(미국)에서 최초로 비준되었고, 1997년 6월 WACC(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협회)에서 승인, 1998년 AMARC(세계공동체라디오연합)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할 것. www.pccharter.net

제2장 자유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그 제한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은 항상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하며 효과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제3장 액세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전통 및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위한 지역 및 전지구적 차원의 자원과 시설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견해와 정보, 사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취향과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적 생산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미디어의 소유 및 정보원에 관한 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은 공공선과 납득할만한 이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민주 사회를 수호하거나 다른 이들의 기본 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거나 또는 국제 기본 인권 기준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그러하다.

제4장 독립

사람들이 자립적인(self-reliant)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혜택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미디어의 발전, 전문적인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미디어 연합체 / 조합체 / 노동조합의 설립, 국제적 표준의 수용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5장 리터러시

모든 사람은 공적 논의와 커뮤니케이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획득할 권리가 갖는다. 이것은 읽고, 쓰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인 미디어 인식, 컴퓨터 작동능력, 그리고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요구한다.

제6장 언론인 보호

언론인은 특히, 무장 갈등지역에서 국제 인권법을 포함하여 법의 보호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보원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시, 국제기구를 통해 처방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장 반론하고 정정할 권리

모든 사람은 부정확하고 그릇되며 차별적이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형태의 공적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갖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옴부즈맨(Ombudsmen)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법원과 같은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장 문화 정체성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할 권리가 갖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존중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포함한다. 사람들의 문화적 공간과 유산을 보호할 권리는 다른 인권 혹은 이 헌장의 조항을 침해할 수 없다.

제9장 언어의 다원성

모든 사람은 언어의 다원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표현된 정보에 접근하고 그들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필요한 장소에서 소수언어 이용이 적절히 제공될 권리가 갖는 것을 포함한다.

제10장 정책결정에의 참여

모든 사람은 정보의 제공에 대한 공공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또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 –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또한 지식의 개발과 이용, 문화의 확산 · 보호 · 발전,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선택과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 미디어 산업은 그들의 소유 구조, 운영 정책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장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들은 매스 미디어 상품이 어린이들의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건강하게 육체적 정서적 감정적 발전을 고양할 수 있게끔 고안되어져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어린이들은 집, 학교, 놀이 공간, 혹은 일터 등에서 해로운 미디어 상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상업적 혹은 다른 차취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그들의 언어로 어린이들을 위해 고안된 고품질의 문화와 오락물이 생산되고 배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장 가상공간

모든 사람은 사이버 공간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롭고 열린 커뮤니티에 대한 권리, 전자적 표현에 대한 자유, 전자적인 감시와 침해로부터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

제13장 프라이버시

모든 사람은 공의과 상관없는 진술이 공적으로 유포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허락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여타의 사적 커뮤니케이션, 비밀리에 제공되거나 받은 개인적인 정보가 공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적 혹은 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거래로부터 유출된 정보는 허락 없이 사업적 혹은 일반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 혹은 정의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4장 해악

사람들은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증오, 편견, 폭력, 전쟁에 대한 선동에 대항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폭력은 정상적인 것, “남성다운” 것, 혹은 오락적인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폭력의 진정한 결과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해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되나, 무엇이 수용될 수 없는 해악인가에 대한 이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 균형을 찾기 위해 공적 토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제15장 재판

사람들은 미디어가 재판에 관한 보도에서 정당한 절차의 기준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디어가 유죄판결 이전에 유죄를 추정하지 말아야 하며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범죄재판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장 소비자 보호

사람들은 유용하고 사실에 입각한 소비자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미디어는 뉴스와 오락으로 위장된 판매촉진(정보 광고, 상품 배치, 프랜차이즈 된 캐릭터와 장난감을 이용한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회피하고 필요시 폭로해야 한다. 또한 낭비적이고 불필요하며 해롭거나, 생태학적으로 위협적인 요구, 필요, 상품과 활동 등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장 지적재산권

사람들은 공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 과학 및 기술적 지식, 그리고 문화 생산물에 저렴하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이를 저해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정보와 지식, 문화를 생산하는 자와 이용하고 소비하는 자 간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한보다 연장되어서는 안 되며, 저작권물이라 하더라도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 “공정 이용”的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장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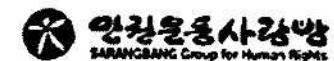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이 현장에 입각한 기준을 고수하며 일반 공중에 책임을 지는 미디어를 가질 권리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디어는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체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19장 이행

조인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 현장을 널리 알리고, 가능한 많은 국가 및 국제법에 구현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국가 및 미디어의 수행을 감시 및 평가하고,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며, 적절한 수정 조치를 권고하고, 이 현장을 정기적으로 검토, 발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적 메커니즘을 조직할 것이다.



미디액트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일민미술관 5층
전화 02·2020·2260 팩스 02·2020·2265
www.mediact.org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전화 02·365·5363 팩스 02·365·5364
www.sarangbang.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701·7687
www.jinbo.net